

제주지방법원 2016. 9. 23 선고 2015가단16049, 2016가단3828(병합), 2016가단5121(병합)
판결 [가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· 가건물철거및토지인도 · 가건물철거및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 영농조합법인

4. E

5. F

변론 종결2016. 9. 9.

판결 선고2016. 9. 23.

주 문

1. 원고에게,

가. 피고 D 영농조합법인, 피고 F은 제주시 G 임야 4521m² 중 별지 도면 표시 17, 18, 19, 20,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마'부분 조립식 판넬 지붕 H체험장 90m²를,

나. 피고 C, 피고 E은 제주시 G 임야 4521m² 중 별지 도면 표시 21, 22, 23, 24,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바'부분 조립식 판넬 지붕 판매장 125m²를,

다. 피고 B은 제주시 G 임야 4521m²를

각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이영호

별지